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 년 10 월 15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글로벌자산운용 주식회사
(영문명) Global One Asset Management Co.,Ltd
(홈페이지) <http://www.g1am.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4층
(전 화) 02-3451-9100

대 표 이 사 : 오 희 열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
(성 명)조성진 (전 화)02-3451-9100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정지영 (전 화)02-3451-910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1호)

소송 등의 제기 (1)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기관투자자 (OO증권 주식회사)
3. 청구내용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6. 제기일자	2024.10.04
7. 확인일자	2024.10.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다툼.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